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일 및 제출자 : 2003. 4.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3. 4. 9
- 다. 의안번호 : 제 2003 - 12호
- 라. 상정일자 : 2003. 4. 12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안수상)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788호 2002.11.29)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이용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지방청사 신·증축시 사무실 표준면적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연체요율을 인하함.(안 제21조 제1항, 제2항,제3항)
 - 기존 5% ~ 8% ⇒ 변경 4%~ 6%
-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중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의2제1항)
 - 다만,영리목적(농경지제외)으로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2조 사용료의 요율에 따르도록함)
-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차등 부과함. (안 제27조제1항)
 - 기존 : 일률적 15% 적용

- 변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⑥항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비율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 청사등의 표준설계 기준을 정함.(안 제45조)

- 지방청사 신·증축시 “별표1”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준용토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하춘영)

- 공유재산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공용·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며,
-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2. 11. 29)에 의거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중 영리 목적일 경우는 제외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연체시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사등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산정에 관한 용역실시 결과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 표준안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기재 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2. 11. 29)에 의거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중 영리 목적일 경우는 제외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연체시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발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과,
- 청사등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 표준안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